



金 在 鳳

〈企劃調查部·企劃課長〉

I. 序 論

損害保險契約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因하여 생길 被保險者의 財產上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約定하고 保險契約者が 이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保險料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商法 第638條, 第665條) 一種의 損害補償契約이다.

이와같이 保險者の 損害補償責任이 保險契約上 核心的인 義務이면서 保險契約의 射倖契約性으로 말미암아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에는 그 損害補償의 問題들을 둘러 싸고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사이에 恒常 紛爭의 餘地가 많은 것이 事實이다.

保險契約은 危險의 分散에 의하여 經濟生活의 安定을 追求하는 制度라는 점에서 일단 保險事故로 인하여 財產上의 被害를 입은 被保險者의 利益을 損害發生 直前の 財政狀態로 復舊하도록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保險制度를 惡用하는 弊端을 放置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被保險者が 實際 損害額보다 많은 补償을 받게 된다면 保險金에서 利益을 얻기 위하여 財物을 파괴하고자 하는 道德的危險(moral risk)의 要因이 생길 것이며, 또한 保險金額이 適切하였을 때에도 被保險者が 損害額以下로 补償을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保險契約은 所

期의 目的을 达하지 못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 保險者의 責任範圍를 決定하고, 賭博保險이나 超過保險을 防止하고 被保險利益의 評價額限度를 補償함으로서 人爲的인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保險의 目的이며 被保險利益의 時價인 保險價額의 決定과 保險價額決定 時期등 問題와 關聯하여 保險會社가 支給하는 損害補償의 最高限度이며 保險料의 算出基礎가 되는 保險金額間에 惹起될 수 있는 多은 紛爭의 要素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現在 「韓國火災保險協會」에서 國內 10個 元受會社의 「損害保險共同引受協定」에 의거 引受代行하고 있는 對象物件中, 1973. 2. 6 法律 第2482號로 制定·公布된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따라 서울을 비롯하여 全國 7個 主要都市에 所在하고 있는 特殊建物에 對한 義務保險인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을 取扱함에 있어 特殊建物에 대한 價額決定問題와 關聯하여 損害保險契約의 核心的 義務인 損害補償에서 惹起될 수 있는 問題點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被保險利益

1. 被保險利益의 意義

“利益 없으면 保險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뜻과 같이 被保險利益은 적어도 損害保險契約의 中心要素를 이루고 있으며 射倖契約인 保險契約을 賭博 등과 區別하는重要な 뜻을 가지고 있다.

商法 第668條에 “保險契約은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에 限하여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서 被保險利益을 表現하고 있지만 이는 保險의 目的(商法 第666條 第1號, 第675條, 第678條, 第679條)과는 區別되는 概念이다.

다시 말하면 保險의 目的是 保險契約의 對象인 財貨를 말하고 保險契約의 目的是 그것이 가지고 있는 被保險利益을 말한다. 例컨데 同一한 建物을 所有者가 火災保險에 加入하는 경우와 貸借人이 保險에 加入하는 경우에 保險의 目的是同一한 建物이지만 被保險利益은 前者の 경우에는 建物에 대한 所有權者로서의 利益이고, 後者인 貸借人の 경우에는 專賣保證金의 保存을 對備한 消極的利益인 것이다.

利益本質이란 解釋如何에 따라 諸學說들이 구구하나 被保險利益이란 一定物에 危險이 發生함으로서 一定人에게 經濟上의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所謂「人」과 「物」의 關係라고 定義하는 關係說이 보편적인 學說로 認定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被保險利益의 形態로는一般的으로 ①所有權利益 ②期待利益 ③擔保權者利益 ④責任利益 ⑤費用利益 등이 있다.

2. 被保險利益의 要件

被保險利益으로서 一般的으로 갖추어야 할 要件은 첫째, 被保險利益은 適法性이 있어야 한다. 즉 被保險利益이 保險의 인 保護를 받기 위하여는 脱稅, 窃盜, 賭博, 密輸出入, 收賄 등으로 因하여 받은 利益과 같이 不法의인 경우라든가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反하는 利益 및 債權은 被保險利益이 될 수 없다. 또한 그 適法性的 판단은 客觀的인 問題로서 當事者 또는 被保險者的 善意 또는 惡意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한 被保險利益의 適法性은 利益主體의 人的狀態와는 關係가 없다.

둘째, 經濟性이다.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補償하는 紙付는 經濟的인 利益이기 때문에 紙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利益도 經濟的인 利益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經濟的인 利益이란 利益이 財產의 價值를 가지는 것으로 金錢으로 算定할 수 있는 利益(商法 第668條)을 意味한다. 따라서 利益이 主觀的이던 客觀的이던, 또는 積極의이던 消極의이던 相關敘述이나 어느 特定人的 感情利益이나 嗜好利益은 被保險利益으로 할 수 없으나, 반드시 法律上의 關係 또는 權利인 것 만을 要하지는 않는다.

셋째, 確定性이다.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의 한 要素로서 契約締結當時 그 存在 및 所屬이 確定하거나 確定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利益이 確定되지 않으면 損害도 確定되지 않아 保險者가 補償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利益은 現存하는 確定利益에 限하지 않고 未必의 利益, 條件付利益 등을 保險契約의 目的으로 할 수 있고 不確定한 利益 또는 確定할 수 없는 利益은 保險의 目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被保險利益은 반드시 現存하는 것이 아니라 無妨하다. 즉 將來에 있어서 存在하는 利益이란 것을 現在 確定할 수 있으면 付保가 可能하다.

3. 被保險利益의 評價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損害保險은 損害補償契約으로 補償의 正確을 期하기 위하여는 保險價額 즉 被保險利益의 正確한 評價가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商法에서는 當事者間에 保險契約締結當時에 保險價額을 미리 定한 때에는 이를 既評價保險(valued policy)이라 하고 이 경우에 保險價額은 事故發生時의 價額으로 定한 것으로 推定하고 다만, 그 價額이 事故發生當時의 價額을 顯著하게 超過할 때에는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商法 第670條)고 規定하였다.

反對로 當事者間에 契約當時에 價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未評價保險(unvalued policy)이라 하고 事故發生時의 價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商法 第671條)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같이 被保險利益을 評價하는 方法 및 時期에 따라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III. 既評價保險

1. 既評價保險의 概念

既評價保險이 認定되고 있는 理由는 保險價額은 때때로 變하는 것이고 특히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의 評價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점에서 미리 保險價額을 當事者 사이에 合意를 하여 確定시켜 둠으로써 保險事故發生時에 紛爭을 제거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事故가 發生한 경우에 損害額은 事故發生의 때와 地에 있어 被保險利益의 價額에 의해 算定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이와같은 客觀的價額을 事故發生後에 算定하는 것은 容易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評價를 通하여 當事者間에 紛爭이 일어나는 일에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商法에서는 契約當事者가 事前에 保險價額을 協定하는 것을 認定, 이것을 協定한 경우에는 그것이 客觀的인 保險價額과一致되지 않아도 그것을 基準으로 하여 損害額을決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例外적으로 協定 保險價額이 保險事故가 發生한 때의 保險目的物의 價額을 顯著하게 초과할 때에는 客觀的 保險價額을 限度로 补償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이와같이 事前에 保險價額이 協定된 保險이 既評價保險이다.

既評價保險에 關하여는 대부분의 國家가 그

effort을 認定하고 있는데 例컨대 우리商法의 第670條를 비롯하여 獨逸保險契約法 第57條, 獨逸商法 第793條, 「스위스」保險契約法 第65條, 伊太利民法 第1908條, 英國海上保險法 第27條, 第3項 및 日本商法 第639條 등에 그立法例를 볼 수 있다.

2. 既評價保險과 未評價保險의 比較

評價가 困難한 物件이나 新價保險(Neuwertversicherung)에 있어 契約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事前에 協定한 既評價保險에 있어서의 补償은 實損補償을 原則으로 하기 때문에 罷災發生時 契約當事者間에 补償에 대한 紛爭이 적고 保險募集者의 過度한 評價를 防止한다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短點으로서는 火災保險과 같이 수많은 每契約件마다 일일히 評價를 위한 事前検査는 技術의으로나 時間의으로 많은 問題點이 있으며 事前에 價額을決定, 實損補償을 하게 되어 道德의危險이 豫見된다.

未評價保險은 契約當時에 當事者間에 保險價額을 定하지 않고 补償에 있어 損害가 發生한 때와 地의 價額(保險價額時價主義)으로 하는 保險契約으로 保險者나 契約者의 負擔없이 많은 件數를 取扱할 수 있고, 따라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原則으로 認定하지 않음으로合理的이고 事實上의 补償을 하게 됨으로 도덕적 危險을 防止할 수 있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善意의인 补償을 받지 못할 때에 保險이라는 經濟的制度의 本來의 使命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當事者間에 紛爭의 餘地가 많다는 短點이 있는 것이다.

3. 既評價保險의 补償判例

英國에서는 既評價保險은 보석, 미술품 其他 그 價格이 급하게 變化되지 않은 商品에 對하여 가끔 販賣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保險金額은 반드시 專門감정인에 의하여 計算되어야 하며 각 目的物이 각各 明記되고 金額도 個別의

으로 表示되어야 한다. 補償은 역시 全損時에는 價額의 變化與否에 相關없이 該當保險金額의 全額이 支給되는 것은 一般原則과 다를 바 없다.

또한 既評價保險은 在庫品目明細 및 評價特約(inventory and valuation clause)이 블은 保險과는 明確히 區別되고 있으며 이때 目的物에 대한 在庫品目明細 및 評價特約을 作成 그 寫本 1枚를 會社에 提交하는 경우에는 罷災時 保險會社에서 送狀(invoice)등 價額查定의 증거를 提示받을 必要가 有으며 保險金額을 基礎로 損害查定을 한다. 이 경우 罷災時點에서의 價額評價나 감가상각을 適用함으로서 이 保險은 既評價保險이 아니며 보통의 未評價保險과 同一한 것이다. 保險會社에서 補償限度는 당연히 證券上의 保險金額을 초과하지 않는다.

1811年 英國에서 既評價保險에 對한 判例(Felise와 Aguilar)를 보면 “이 保險下에서는 被保險利益의 크기를 證明하는 것이 必要하지 않다”는 것이 거듭 主張되었으며, 그러므로 재판부는 付保된 價額이 원고의 利益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既評價保險下에서 分損의 경우에 保險金查定에 問題點이 제기되었는데 즉 1949年 Elcock와 Thomson 사이의 紛爭에서 “保險金은 證券上의 保險金額에다가 火災로 因해서 감액된 比率을 곱하여 얻어진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公式은 證券上에 全損과 分損의 區別이 有을 때에도 適用되는데 實際로는 全損處理에 限定하고 分損의 경우에는 未評價保險에서와 같은 原理로 補償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들로 火災保險에서의 既評價保險은 보석, 미술품과 같은 價格變動이 심하지 않은 目的物에 對하여 保險會社에서 公認된 專門鑑定人에 의한 評價를 거친 뒤에 販賣되며一般的으로 價格變動이 심한 目的物에 對하여는 販賣하기를 願하지 않으며 海上保險의 積荷保險과 같이 商業의 補償을 必要로 하는 保險은 通常적으로 既評價保險이 販賣되고 있다.

IV. 特殊建物에 對한 損害補償

1. 特殊建物保險의 特징

國家經濟發達에 따라 必然의 으로 擙頭되고 있는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豫防하고 迅速한 災害복구와 人命被害에 대한 適正한 補償으로 國民經濟生活의 安定에 寄與한 目的으로 1973年 2月 6日 法律 第2482號로 制定·公布된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依據, 서울을 비롯하여 全國 7個 主要都市에 所在하고 있는 特殊建物에 對하여 의무적으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도록 하였는 바, 이를 韓國火災保險協會에서 共同引受를 代行하고 있다.

保險은 利益社會의 特產物로서 自然發生의 으로 生成·發展한 것은 他產業과 다를 바 없으나 國家에 의한 資金供給의 不安定과 企業自體의 資本蓄積의 零細性을 免치 못하는 產業構造下에서는 國家經濟的 觀點에서 損害保險制度의 自發의 인 利用에만 期待할 수 有하는 現實의 要請과 保險產業의 發展의 speed를 加速化하여 短時日內에 目的認識의 으로 어느 程度까지 끌고 가기 위해 は서는 自律아닌 他律도 必要하며 他律은 대개의 경우 立法으로 國民에게 強要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義務化된 特殊建物에 對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은 從來의 火災保險 本來의 機能인 損害補償과 金融機能 以外에 無過失責任에 따른 身體損害賠償制度까지 確立하므로서 社會保障의 機能을 加味하였고, 그 위에 火災의豫防과 損害의擴散防止 등 保險會社와 保險加入者的 共同의 安全을 도모하고 있는 重大한 特色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保險加入의 強制化되고 있는 特殊建物들의 罷災發生時 加入義務者에게迅速하고 適正한 補償을 期하고 國家經濟發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保險加入권유에서부터 補償에 이

르기까지 最大限의 公信力を 바탕으로 한 保險者의 責任을 다해야 할 줄 생각한다.

2. 特殊建物의 評價와 補償

火保法에 의한 特約付火災保険은 特殊建物의 時價에 該當하는 金額을 保險金額으로 하여(法第8條 第1項 第1號), 그 時價의 決定에 關한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하여(法第8條 第2項), 特殊建物時價決定方法(施行規則 第2條의2)은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한 金額을 基準하여 決定하여 이 경우에 當該建物의 建築設計要領, 建築資材의 優劣, 施工方法의 差等, 地域差, 用途, 使用時間에 따른 減價와 物價上昇率들을 考慮하여 이 基準額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으며 이 範圍를 超過하여 時價를 加減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契約當事者間에 合意에 의하여 決定하도록 規定하였다.

이와 같은 關係規定에 따라 決定된 特殊建物의 債額이 契約當時 當事者間에 合意에 의한 既評價保險으로 볼 것이나 아니면 強制保險下에서 債額決定基準이란 지나친 一部保險이나 형식적인 保險加入으로 法의義務를 다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防止하여 法定保險加入 限度額을 定하므로서 補償에 對한 實効를 거두기 위한 것이나 하는 問題는 상당히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火保法 第8條 및 同施行令 第5條에 身體損害에 對한 補償基準은 規定되어 있지만, 財產損害에 對하여는 그 補償基準이 明文化된 規定이 없기 때문에 앞서 指摘된 債額評價問題와 關聯하여 補償에 따른 粉爭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 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하여 特殊建物所有者와 保險者間에 合意에 의하여 決定된 保險金額을 既評價保險으로 본다면 商法 第670條의 規定에 따라 罷災發生時의 債額을 契約當時의 債額으로 推定 當然히 實損補償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다.

그러나 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한 保險金額決定이 保險目的物의 債額과 반드시 一致된다면一般的인 損害保險原理에 따라 實損補償에 대한妥當性이 認定되나 實際에 있어서 保險契約締結時 保險目的物에 對한 正確한 評價를 할 수 없는 與件下에서는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즉

① 契約當事者가 正確한 鑑定을 할 수 있는 專門知識이 없고,

② 一般的으로 特殊建物所有者들은 義務保險이라는 他意性과 保險料負擔이란 經濟的인 支出때문에 可能한限 所有建物에 대한 評價를 낮게 하려고 하는 性向이 많고,

③ 契約當時와 罷災發生當時의 時間의in 差異에서 오는 物價變動에 의한 時價變動과

④ 時價決定基準額表의 細分化의 限界性으로 同基準額表만 가지고 大型建物일 경우 內裝材등 建物의 從物에 대한 個別의 價值測定에 依한坪當單價의 算出이 困難하고

⑤ 特히 大型工場인 경우, 安全點檢의 限界性을 勘案할 때, 數百種의 機械 및 附帶施設의 時價算出이 極히 어려운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問題點으로 보아 補償時에 全損의 경우에는 현저한 超過保險을 除外하고는 別問題가 없겠으나, 分損일 경우 實損補償을 하게 되면

① 一部保險인 경우에는 被保險者の 不當利益을 얻게되는 結果를 招來하여 保險의 基本原理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契約者の 衡平의 原則에도 違背된다.

② 超過保險인 경우 道德的危險이 發生할 우려가 많아 社會惡을 造成시키는 契機가 될 것이다.

V. 結論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 被保險利益의 本質과 機能을 어떻게 理解할 것이냐하는 問題, 다시 말

하면 商法 第668條의 條文과 같이 被保險利益은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하는 保險契約의 成立을 위해 內面的要件으로 보는 絶對主義가 아닌 客觀主義로 볼 것인가, 또는 損害保險契約이 反公序良俗的行爲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政策的으로 要求되는 外面的要件에 不過하다고 보는 主觀主義가 아닌 相對主義가 正當한가 하는 問題는 論外로 하고라도, 罷災發生時 被保險利益의 價額이 保險金支出額의 限度를 超한다고 하는 原則에 對하여 既評價保險에서는 協定保險價額이 損害額의 算定에 있어서 基準이 되기 때문에 保險者가 顯著한 超過保險으로 補償額의 減少를 請求하지 않는限 協定保險價額이 拘束力을 갖고, 뿐만 아니라 保險契約이 超過保險이냐 全部保險이냐, 一部保險이냐 하는 問題도 協定保險價額과 保險金額과의 關係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니 만치 경우에 따라서는 實損害以上의 保險金이 支拂되는 경우도 法律上豫想되는 것이다.

特殊建物所有者로서는 保險者와 合意한 後에 決定된 價額이 既評價保險으로 즉, 全部保險의

要件으로 保險金額을 定한 것으로 간주하여 契約을 繼續하여 오다가 事故發生後에 그것이 超過保險이라 해서 補償額이 客觀的價額으로 減少된다든가 혹은 反對로 一部保險이라 해서 比例補償밖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結果가 된다면 保險契約者保護의 觀點에서나 保險事業의 社會的公信力維持라는 點에서 보아도 좋지 않은結果를 超來하게 될 것이다.

또한 保險商品은 國際的인 商品으로 비록 그것이 어느 한 國家의 法律에 의한 強制保險이라 할지라도 危險分散을 위한 再保險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원활하게 驅使하기 위하여는 保險商品의 國際化가 不可避하기 때문에 保險商品의 取扱에 있어 國際的인 慣例를 결코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現行 火保法에 의해 取扱되고 있는 特殊建物에 對한 保險價額決定과 關聯하여 補償에 對한 未備點을 补完하므로서 앞으로 起起될 수 있는 粉爭의 要素를 事前에 排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끝〉

火災豫防으로 福된 生活 이룩하자